

【 21 】 양주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제출년월일 : 1997. 11. 4.

제출자 : 양 주 군 수

제안이유

양주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관련 인용조항을 명확히 규정코자 함.

주요골자

가.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에

삽입하는 등 인용법령을 일부 수정함. (안 제1조)

나. 생활폐기물 수집, 운반, 처리의 대행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삽입함. (안 제
11조)

양주군 조례 제 호

양주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양주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조중 “동법시행령(이하“령”이라 한다) 및 동법시행규칙(이하“규칙”이라 한다)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“를”동법시행령(이하“령”이라 한다), 동법시행규칙(이하“규칙”이라 한다) 및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의”로 한다.

안 제1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“이 경우 대행계약의 체결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의한다”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, 구조문 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, 동법시행령(이하 "령"이라 한다) 및 동법시행규칙(이하 "규칙"이라 한다)에서 의정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), 동법시행규칙(이하 "규칙"이라 한다) 및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 원등에 관한 법률의 ----- -----</p>
<p>제11조(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·처리의대행)</p> <p>① 군수는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수거·운반·처리를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수집·운반·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처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(생략)</p> <p>④ (생략)</p> <p>⑤ (생략)</p>	<p>제11조(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·처리의대행)</p> <p>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, 이 경우 대행계약의 체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.</p> <p>② (-----)</p> <p>③ (-----)</p> <p>④ (-----)</p> <p>⑤ (-----)</p>